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안전계획 교직원 연수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송포초등학교

내 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학교안전계획 수립·평가의 내실화]에서 학교의 장은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3월 중 「학교안전계획」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송포초등학교에서는 아래 2021학년도 학교안전계획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2년 6월 실시하는 등 지연 실시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① 송포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회계 예산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 송포초등학교

내 용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에 의거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나고,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8조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예산 심의 확정 후 10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송포초등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개시 30일전(2021.01.29.)까지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7일이 도과한 2021.02.05.에 제출함으로써 예산안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2020학년도 제3회(2020. 11. 20. 확정), 4회(2020. 12. 31. 확정), 제5회(2021. 2. 21. 확정) 추가경정 예산서를 2021. 3. 3.일에 일괄 지연하여 올린 사실이 있다. 또한, 2020학년도 3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2021년 1월 4일 공개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① 송포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1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 경기도교육청

##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물품선정위원회 업무 소홀

관계기관 송포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2019.12)에 따르면 물품 추정가격 1천만원(1회 납품 총액 기준) 이상 구매 시 수요자 중심으로 5인이상 구성(학생, 학부모, 담당교사 등)하여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달 3자단가 제품인 경우 제품선정, 나라장터 미등록제품인 경우 규격을 선정심의 하여야 한다.

그런데 송포초등학교에서는 <표>과 같이 운동장 배수로 그레이팅 덮개 구입 및 교실 노후 텔레비전 교체 구입건에 대하여 물품선정위원회 개최시 등록부와 평가표의 서명이 누락된 사실이 있다.

### [표]물품선정위원회 실시 현황

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	납품일 (준공일)	검사일
그레이팅 덮개 구입	○○○○	12,927,200원	2020.11.24.	2020.12.10.	2020.12.10.
텔레비전 교체 구입	○○전자 ○○전자	10,940,000원	2020.12.14.	2020.12.15.	2020.12.18.

### 【조치할 사항】

- ① 송포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1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발전기금 운영·관리 부적정

관계기관 송포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이 인계를 할 때에는 교체일의 전일 현재로 발전기금 출납을 마감하고,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 교체 후 14일 이내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매 분기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집행일자, 세부내역, 금액)등 해당 발전기금 조성·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분기별로 1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송포초등학교는 2021년도에 학교발전기금 출납 명령기관(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발전기금출납명령기관 업무인계인수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송포초등학교에서는 2020학년도 집행 및 접수내역을 매 분기별이 아닌 2021.6.23.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1회 공개함에 따라 공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① 송포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